

# 연금저축 추가납입특약

## 제1관 목적 및 용어

제 1조 [ 목적 ]

제 2조 [ 용어의 정의 ]

##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

제 3조 [ 특약의 적용 ]

제 4조 [ 특약의 체결 및 소멸 ]

## 제3관 보험료의 납입

제 5조 [ 특약보험료의 납입 ]

## 제4관 기타 사항

제 6조 [ 주계약 약관의 준용 ]

# 연금저축 추가납입특약

##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

### 제 1조 [ 목적 ]

이 보험계약(이하 '계약'이라 합니다)은 보험계약자(이하 '계약자'라 합니다)와 보험회사(이하 '회사'라 합니다) 사이에 주계약에 추가납입을 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.

### 제 2조 [ 용어의 정의 ]

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,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.

#### 1. 계약관계 관련 용어

- 가. 계약자 :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.
- 나. 피보험자 :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##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

### 제 3조 [ 특약의 적용 ]

이 특약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라 가입한 모든 연금저축에 적용합니다.

### 제 4조 [ 특약의 체결 및 소멸 ]

-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.
- ②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


#### 용어해설

##### [ 보장개시일 ]

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특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,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. 또한,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.

##### [ 해지 ]

현재 유지되고 있는 특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특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.

## 제3관 보험료의 납입

### 제 5조 [ 특약보험료의 납입 ]

- ① 추가납입특약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에 따라 특약이 성립한 날부터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중 납입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계약자는 주계약의 납입유예기간 동안 추가납입특약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. 회사는 계약자가 추가납입특약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. 다만, 금융회사(우체국 포함)를 통하여 추가납입특약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특약보험료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.

## 제4관 기타 사항

### 제 6조 [ 주계약 약관의 준용 ]

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